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31
----------	-------

발의연월일 : 2026. 9. 11.

발 의 자 : 박은정 · 김준형 · 정춘생
김재원 · 양부남 · 차규근
서왕진 · 강경숙 · 손 술
박주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2항 신설).
- 다. 구금·수용 시설 등의 장은 조사관의 면접 및 관계자료 열람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조사관은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에 필요한 보고서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조사보고서 제출 시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열람 또는 복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5항 신설).

마. 양형자료조사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6항 신설).

바. 조사관의 자격·임면·권한 및 양형자료조사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7조의3제7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通譯人”을 각각 “통역인 및 조사관”으로 한다.

제29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여부, 소송지연의 가능성 및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등의 제출 이전에도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한 경우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구금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와의 면접 또는 관계자료의 열람 등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회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열람 또는 복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通譯人에 準用한다. ②전前項의 法원사무관등과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신 설>	第25條(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 ----- ----- -----통역인 및 조사관--. ②-----통역인 및 조사관----- ----- ---. ----- ----- ---. 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u>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진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직권으로 또는 <u>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u>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여부, 소송
지연의 가능성 및 검사·피고
인 또는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입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자료 등의 제출 이전에
도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
료의 조사를 명한 경우에는 검
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보하여
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
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를 구금 또는 수
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대상
자와의 면접 또는 관계자료의
열람 등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공무소 기타 공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조회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
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열람 또는 복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사관의 자격, 임면 및 권한, 양형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